

17.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2019년 9월 6일
- 제안자 : 이시복, 강성환, 김대현, 김동식, 김성태, 김재우, 김지만, 김태원, 박갑상, 이만규, 이진련, 이태손, 임태상, 장상수, 전경원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9월 9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
 -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19년 9월 19일) : [수정안가결](#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시복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관내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사전·사후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임.

-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를 보면, 7대 특·광역시 중 교통복지지표 종합평가는 63점(5위)에 불과하여 개선이 요구됨.
-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및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,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함(안 제18조)
- 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(안 제19조)
-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20조)
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명시함(안 제21조)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규정함(안 제22조)
-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, 내용 등을 규정함(안 제23조)

□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참조
- 관계 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.
- 기 타 : 없음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학수)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시행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이동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.

[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]

(2017년말 기준)

구분	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				여객시설주변 보행환경		보행 안전도		저상버스 보급률	
	여객시설		교통수단							
	환산값	순위	환산값	순위	환산값	순위	환산값	순위	환산값	순위
서울	13.5	3	12.6	2	12.4	1	4.8	5	10.0	1
부산	13.6	2	11.1	3	9.3	4	5.2	4	5.6	5
대구	8.4	7	5.4	8	9.8	3	4.4	8	7.6	2
인천	10.4	5	13.6	1	10.3	2	7.8	2	4.7	7
광주	14.6	1	10.4	4	6.4	5	4.5	7	5.3	6
대전	12.8	4	9.6	5	6.3	6	4.7	6	6.2	4
울산	8.5	6	7.7	7	5.0	8	5.9	3	4.0	8
세종	5.8	8	9.5	6	5.5	7	10.9	1	6.3	3

구분	특별교통수단 보급률		특별교통수단 이용률		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		교통복지 행정		종합		비고 (전년도 순위)
	환산값	순위	환산값	순위	환산값	순위	환산값	순위	점수	순위	
서울	4.5	4	4.2	5	7.9	4	11.6	2	81.6	1	1
부산	4.1	6	3.9	6	8.3	3	5.9	7	67.1	3	2
대구	7.1	2	6.9	1	4.4	7	9.1	4	63.1	5	7
인천	8.8	1	5.8	2	9.4	2	10.5	3	81.2	2	4
광주	4.7	3	4.5	4	4.5	6	9.0	5	64.0	4	6
대전	3.5	8	2.9	7	4.2	8	12.3	1	62.5	6	3
울산	4.3	5	4.7	3	6.7	5	7.5	6	54.1	8	5
세종	3.7	7	2.8	8	10.4	1	4.9	8	59.8	7	-

- 대구시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중 교통수단 및 보행자 안전도 부분에서 8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고,
-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키는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.
- 또한, 교통약자 유형으로는 고령자(65세 이상)가 가장 높은 비율(약 50%)을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등의 본 조례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임.
-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·사후검사, 검사반의 구성과 직무, 검사결과의 반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적시하였는데, 이는 이동편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한편, 안 제18조에서 사전검사는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, 사후검사는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규정하여 그 시기가 모호하고, 안 제19조에서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,

- 명확하고 효율적인 검사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대상시설별 검사시기와 검사반의 인원을 편성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안 제21조에서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·운영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제3의 전문기관(비영리법인)에 의뢰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검사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.
- 다만,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를 위해서는 그 타당성과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검사관련 업무 의뢰 또는 위탁에 필요한 의뢰(위탁) 및 기관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임.
- 안 제22조는 교통약자가 개별시설물 이나 특정지역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·설계·시공될 수 있도록 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음.
-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안 제18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어떤 시설이 검사 대상이며, 검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? 또한,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검사시기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는지?</p>	<p>○ 설계도면, 준공시기, 중요성이 높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시로 철저하게 검사해 나가겠음.</p>
<p>○ 안 제21조 제1항에 보면, 전문기관(이하 '이동편의기술센터'라고 한다)처럼 약칭을 사용했는데, 안 제21조 이후에 전문기관이라고 반복되는 명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?</p>	<p>○ 자치법규 정비 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, 약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</p>
<p>○ 안 제19조 제2항에서 검사요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 다라고 되어있는데, 본 조례의 검사요원 구성 취지를 고려해 볼 때 “재직”을 “재임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?</p>	<p>○ 정확한 명칭사용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.</p>

5. 토론요지

- 「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,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.

6. 수정안 요지

- 붙임 ‘위원회 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- 수정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10. 첨부서류

- 위원회 수정안 : [붙임1]

[붙임1]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9조 제2항 후단 중 “재직” 을 “재임” 으로 한다.

안 제21조 제1항 중 “전문기관(이하 ‘이동편의기술센터’ 라고 한다)”
를 “전문기관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9조(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 ~ 3.(생략)</p> <p>②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9조(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 ~ 3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재임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21조(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)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<u>전문기관</u>(이하 '이동편의기술센터'라고 한다)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전문기관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보칙”을 “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”로 한다.

제6장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,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이동편의시설의 검사)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대상(이하 “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 사전검사: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

2. 사후검사: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

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제19조(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)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
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1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단, 검사반에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3.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②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**재임기간** 동안으로 한다.

③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검사 결과 반영) ①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1조(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)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**전문기관**을 설치·

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1. 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·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

2.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

③ 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『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를 준용한다.

④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

제6장 제20조를 제26조로 한다.

제7장(제22조 및 제2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보칙

제22조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
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
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,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